

1. 개정이유

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으로 추가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(안 제38조)

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됨에 따라,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화학적산소요구량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에서 총유기탄소량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로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환경부령 제 호

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화학적 산소 요구량”을 “총유기탄소량”으로, “10밀리그램”을 “6밀리그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) ① 법 제23조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”란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.	제38조(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	2. ----- -----
가.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	<삭 제>
나.·다. (생 략)	나.·다.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23조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폐수배출시설의 경우: <u>화학적 산소요구량</u> 이 2년 이상 리터당 <u>10밀리그램</u> 이하(처리 전	1. ----- <u>총유기 탄소량</u> ----- -- <u>6밀리그램</u> -----

원폐수의 95퍼센트 이상 줄이 는 경우만 해당한다)로 유지 될 것	----- ----- 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